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157
----------	--------

제출년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 제명 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변경

- 1)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안 제1조)
-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안 제1조)
-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안 제4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2) 「물환경보전법」
-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9. 26. ~ 10. 16. (제출된 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2019.11.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을 “「물환경보전법」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u>」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u>대기환경보전법</u>」, 「<u>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u>」 및 「<u>폐기물관리법</u>」 등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신고 대상은 「<u>대기환경보전법</u>」, 「<u>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u>」 및 「<u>폐기물관리법</u>」 등의 <u>환경관련</u>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p>	<p>제1조(목적) ----- 「<u>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u>」 제15조 ----- 「<u>물환경보전법</u>」 및 -----</p> <p>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 「<u>물환경보전법</u>」 ----- <u>환경 관련</u> -----</p>

② (생략)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생략)

②·③ (생략)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접수 및 처리)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제6조(포상) ① -----

----- 지급할 -----.
-----.

1.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
----- 필요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의안의 시행에 비용발생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

4. 작성자 : 도시환경국 환경과 류성훈 (☎ 3153-9274)